true friend 한국투자증권

손해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가능성

- 쿠팡 사태로 손해액의 최대 5배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 가능성 증가
- 현행법에 규정되어 있어 올해 주요 정보유출 사고에 적용 가능
- 정보유출, 불공정거래 등 위법행위에 따른 재무 리스크 확대 전망

ESG Note

2025. 12. 09

쿠팡 사태가 재점화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쿠팡에서 5개월 간 3,370만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태가 발생하면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 인정이 확대되면, 아직 손해배상이 진행되지 않은 SK텔레콤, KT 등 다른 기업의 배상액도 크게 커질 수 있으며 중대재해, 불공정거래 등에도 적용될 수 있어 여러 위법행위에 따른 기업의 재무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징벌적 손해배상(Punitive Damages)은 영미법에서 고의적 악의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 발전한 배상 방식으로, 실제 손해에 대한 배상(Compensatory Damages)의 N배를 배상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국에서는 보통 2배에서 5배 사이에서 징벌적 손해배상의 액수를 정하고 있지만, 매우 중대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이상을 배상액으로 인정하기도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39조 제3항에 따르면,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 발생 시 법원은 손해액의 5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정보처리자의 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하지만 2015년 개인정보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된 이후 10년 간 단 한 번도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된 적이 없다.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 적용하지 않는다'라는 단서조항에 따라 대부분 기업들이 배상책임을 면제받았기 때문이다. 대륙법계의 국내 사법체계에서는 제조물책임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25개의 특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했으나 이를 인정하는 판례가 많지 않았다.

하지만 올해 여러 업종에서 대규모 정보유출 사태가 반복되고 있고, 쿠팡 사태로 국민의 3/5 이상이 피해자가 됐다는 점에서 기존 1인당 10만원 수준의 손해배상은 사고 방지 및 불법행위 억제의 기능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과거 추가적인 피해 없이 개인정보만 유출된 경우 피해자가 받은 직접 손해를 입증하기 쉽지 않아 위자료 개념의 정신적 손해액 10만원 수준에서 배상이 이루어져 왔다. 대통령이 12월 2일 직접 쿠팡 사태와 관련해 과징금 강화와 징벌적 손해배상 현실화를 주문하고, 다음날 개인정보위원회가 제재 강화 및 배상제도 실효성 강화에 나서겠다고 발표한 만큼 기업들의 배상책임 규모가 과거보다 커질 가능성이 높다.

정다솜
dasomj@koreainvestment.com

한국투자증권은 당사 고객 및 별도의 서비스 계약을 맺은 법인에게만 리서치 리포트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의 사전 승인 없이 리포트를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 및 판매하는 행위는 저작권법 위반으로 법적 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표 1> 정보 유출 관련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

구분	손해배상 관련 조항	기타
개인정보 보호법	**제 39 조(손해배상책임)**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처리자가 이 법을 위반한 행위로 손해를 입으면 개인정보처리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개인정보처리자는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하지 아니하면 책임을 면할 수 없다. ② 삭제 <2015. 7. 24.> ③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위조·변조 또는 훼손된 경우로서 정보주체에게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법원은 그 손해액의 5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손해배상액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개인정보처리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법원은 제 3 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또는 손해 발생의 우려를 인식한 정도 2. 위반행위로 인하여 입은 피해 규모 3. 위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정보처리자가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위반행위에 따른 벌금 및 과징금 5. 위반행위의 기간·횟수 등 6. 개인정보처리자의 재산상태 7.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분실·도난·유출 후 해당 개인정보를 회수하기 위하여 노력한 정도 8.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주체의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 2015.07.24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 신설 - 2023.03.14 개정을 통해 적용 배수 3 배 → 5 배로 상향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 43 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이 법을 위반하여 신용정보주체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과 그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수탁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이 법을 위반하여 개인신용정보가 누설되거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되어 신용정보주체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에 대하여 그 손해의 5 배를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신용정보회사등이나 그 밖의 신용정보 이용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법원은 제 2 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보호법 제 4 항과 같음)	- 2015.03.11 징벌적 손해 배상 규정 신설 - 2020.02.04 개정을 통해 적용 배수 3 배 → 5 배로 상향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투자증권

정보유출 사고 발생한 통신·금융사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쿠팡 사태 1인당 손해배상액 10만원 이상 예상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이미 개인정보보호법에 2015년 도입되었으므로, 2016년 이후 발생한 개인정보 유출 사고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이 적용될 수 있다. 쿠팡은 현재 이름, 이메일, 배송지, 전화번호 등이 유출되었다고 밝혔는데, 배송지에는 공동현관 비밀번호가 담겨있고 1개의 계정에 여러 개의 배송지 정보가 등록되어 있기 때문에 피해자수는 더 늘어날 수 있다. 단순 유출 외 2차 피해가 확인될 경우 손해배상액은 1인당 10만원 보다 높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집단소송제가 없어 소송 참여자만 배상

다만,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상 피해자 전체인 3,370만여명 모두에게 배상책임이 발생하지는 않는다. 대표자 몇 명이 소송을 제기하면 판결의 효력이 전체 피해자에게 미치도록 하는 집단소송제도가 개인정보 권리침해 행위의 금지·중지 청구에만 적용되고 손해배상 청구에는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개인정보위원장은 12월 3일 집단소송에 손해배상을 포함하는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는데, 법 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인 만큼 올해 발생한 유출사고에 적용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SKT 1인당 30만원 배상 조정안 불성립

SKT는 피해자 2,300만여명의 0.02%인 약 4,000여명이 분쟁조정을 신청했고, 약 20만여명(0.9%)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참여했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개인정보보호법 제49조의 집단분쟁조정 제도에 따라 11월 초 SKT에 신청자 1인당 30만원(총 12억원)을 배상할 것을 권고했는데, 회사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다른 피해자들도 일반소송에 준해 사건이 있던 날로부터 10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내 조정을 청구할 수 있어 배상금액이 크게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KT, 롯데카드도 징벌적 손해배상 적용 가능

2024년부터 1년 간 펨토셀(초소형 기지국) 관리 부실로 368명이 소액결제 피해를 입고, 약 22만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한 KT 또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다. 297만명의 신용정보가 유출된 롯데카드의 경우 신용정보법에서도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규정하고 있어 배상금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법원 중과실 인정 여부가 관건, 디스커버리제 도입도 논의

개인정보위원회가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을 높인다 해도 결국은 법원에서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되는지가 관건이다.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법 위반 및 그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한 입증책임은 피해자에게 있지만(홈플러스 관련 판례, 2018다262103), 징벌적 손해배상과 관련되어 고의 및 중과실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은 기업에게 있다. 그동안 대부분 기업은 정보유출 사고 발생 시 해킹범죄의 피해자로서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현저한 주의의무 위반이 있어야 하는 중과실 또한 기업이 정보보안체계 운영 및 투자 등을 소명해 인정되지 않아왔다. 기업 내부정보가 증거로 쓰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은 이에 접근하기 어렵다는 점이 지속적으로 지적되어 왔으며, 재판 개시 전 상대방이 가진 증거·자료를 강제로 공개시키는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에 대한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징벌적 배상은 5배 보다는 낮은 수준일 것

만일 기업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인정된다면 법원은 피해규모, 위반행위로 인한 경제적 이익, 과징금 규모,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피해구제 노력 등을 고려하여 징벌적 배상액을 산정하게 된다. 기업들이 정보 유출로 인한 경제적 이익이 없고, 별도로 과징금이 부과되며, 보상안 등 자구책 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의 배수가 5배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과거 판례(2021나74344)에서 개인정보보호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은 재산적 손해배상청구에 한정한다고 해석한 만큼, 정신적 손해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이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표 2> 국내 주요 정보보안 사고 손해배상 사례

기업명	업종	사건발생연도	배상 확정연도	위반행위	소송/합의 결과
옥션	유통	2008	2015	해킹으로 회원 약 1,080 만 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아이디, 계좌번호 등) 유출	원고 패소. 법원은 정보통신 네트워크는 그 특성상 해커의 불법 침입행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완벽한 보안은 기술 발전 속도 등을 고려할 때 기대하기 쉽지 않다며 옥션이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취해야 할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SK 커뮤니케이션즈	IT/소프트웨어	2011	2018	해킹으로 네이트 및 싸이월드 회원 약 3,500 만 명의 개인정보(네이트 및 싸이월드 아이디, 비밀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유출	원고 패소. 법원은 SK 커뮤니케이션즈가 침입차단시스템 등을 운영 중이었으므로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취해야 할 법률상 또는 계약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
KT	통신	2012	2018	해커가 고객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 가입일, 고객번호 등) 유출	1 심은 KT 가 사내통신망 보안 관리를 소홀히 했고, 주민등록번호 등 중요 정보를 암호화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피해자들에게 10 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령 2 심과 대법원은 KT 의 과실 인정하지 않아 원고 최종 패소
롯데카드	금융	2014	2019	(카드 3 사 사태) FDS 업그레이드를 담당한 보안업체 코리아크레딧뷰로 직원이 2010 년 약 1,023 만 명의 정보 유출, 이 중 약 255 만 명의 정보를 대출중개업자 등에게 전달함	피해자들에게 각 10 만원을 지급
KB 국민카드	금융	2014	2018	(카드 3 사 사태) 약 5,300 만 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 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 만원을 지급
NH 농협카드	금융	2014	2018	(카드 3 사 사태) 약 2,500 만 명의 개인정보(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신용카드 관련 정보 등) 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 만원을 지급
인터파크	유통	2016	2020	해커가 내부 전산망을 해킹, 개인정보(비밀번호, 생년월일, 전화번호 등) 유출	피해자들에게 각 10 만원을 지급
홈플러스	유통	2016	2024	경품행사를 진행하면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 3 자 제공에 관한 내용을 응모 화면에 약 1mm 크기로 기재하는 방식을 통해 고객들의 개인정보(주민등록번호 등)를 수집하고, 이를 보험사에 판매	원고 283 명 중 4 명에게 각 5 만~30 만원을 지급. 대법원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보험사에 제공했다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원고 측에 있다고 판단,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함

자료: 사법정보공개포털, 한국투자증권

<표 3> 해외 주요 정보유출 사고 손해배상 사례

기업명	업종	사건발생연도	배상 확정연도	위반행위	소송/합의 결과
Meta	IT	2016	2022	2016 년 미국 대선 당시 8,700 만명의 이용자 데이터 선거 분석 업체에 무단 제공	7 억 2,500 만 달러 배상 (1 인당 배상액 최대 38 달러)
Meta (한국)	IT	2012~2018	2022	330 만명의 개인정보가 이용자 모르게 다른 사업자에게 전송	손해배상소송 1 심 소비자 패소(161 명) (과징금 67 억원 취소소송은 1 심 기각 판결)
T 모바일	통신	2021	2022	7,660 만명 개인정보 유출	3 억 5,000 만 달러 배상 (1 인당 배상액 최대 2 만 5,000 달러)
AT&T	통신	2024	2025	2019 ~ 2024 7,300 만명의 개인정보 다크웹 유출 2024.07 1 억명 고객의 통화/문자 기록 유출	2019 ~ 2024 의 다크웹 유출 사건은 1 억 4,900 만 달러 배상 (1 인당 배상액 최대 5,000 달러) 2024.07 발생 사건은 2,800 만 달러 배상 (1 인당 배상액 최대 2,500 달러)
Equifax	금융 (신용평가)	2017	2019	1 억 4,700 만명 개인정보 유출	7 억 달러 배상 (1 인당 배상액 2 만달러 + 10 년간 무료 서비스 제공)

자료: 각 사 홈페이지, 한국투자증권

기업 위법행위에 따른 재무적 리스크 확대 전망

상법 개정의 흐름 속에 논의되던 징벌적 손해배상

개인정보위원회의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이 나오지 않은 현 시점에서 기업들이 징벌적 손해배상을 받을 가능성을 논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징벌적 손해배상, 집단소송제도, 디스커버리 제도가 배임죄 폐지와 함께 상법 개정 과정에서 계속해서 논의되어 왔고, 코스피 5,000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이 지난 10월 일반적인 상행위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음을 고려하면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의 실효성 개선이 본격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한다. 단순히 쿠팡 사태에 따른 단발성 논의에 그치지는 않을 것이다.

통신, 금융, 유통업종의 ESG 재무 리스크 확대 유의

이미 25개 특별법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나오게 될 실효성 제고 방안은 정보유출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 제품 결함 등 다양한 기업 위법행위 및 피해로 인한 재무적 리스크를 높일 전망이다. 중대재해 사고에도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어 있지만 대부분 민사 손해배상소송 이전에 회사와 유족이 합의를 거치는 경우가 많아 산재 다발 업종인 건설, 조선 업종 등에 대한 리스크는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국내법 대다수는 3배 또는 5배를 징벌적 손해배상의 상한으로 정하고 있어, 정보유출, 부당공동행위, 불공정거래 등이 자주 발생하는 통신, 금융, 유통업종의 리스크 확대에 유의해야 한다.

<표 4> 징벌적 손해배상 관련 상법 개정안

발의인	발의일	법률안 (신설)
오기형 의원 등 10 인	2025.10.17	제 66 조의 2(상인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례) ① 상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상인은 손해의 5 배 또는 상인이 그 원인행위로 인하여 얻은 이득액 중 더 큰 금액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배상할 책임이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상인이 상행위로 인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 경우 2. 영업주가 그 업무에 종사하는 상업사용인의 선임 및 그 사무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한 때 또는 상당한 주의를 하여도 손해가 있을 경우 ② 제 1 항의 책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는 소(訴)로써만 행사할 수 있다. ③ 법원은 제 1 항의 배상액을 정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고의 및 중과실의 정도 2. 발생한 손해의 정도 3.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경제적 이익 4. 상인이 해당 행위로 인하여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그 형사처벌 또는 행정처분의 내용 및 정도 5. 상인의 재산상태 6. 상인이 피해구제를 위하여 노력한 정도 ④ 제 1 항의 배상책임을 미리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특약은 효력이 없다. ⑤ 이 조는 손해배상책임을 정하는 다른 법률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부 칙 제 1 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 조(적용례) 제 66 조의 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행하여진 행위로 인한 손해부터 적용한다.

자료: 의안정보시스템, 한국투자증권

<표 5> 징벌적 손해배상 규정하고 있는 주요 법률

법률	적용 행위(손해)	적용 최대배수	도입 시점	기타 특이사항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4 조(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제 8 조제 1 항(부당한 위탁 취소), 제 10 조(부당반품), 제 11 조제 1 항 • 제 2 항(하도금대금 감액) 제 12 조의 3 제 4 항(기술자료 제공 요구), 제 19 조(보복조치)를 위반한 경우	- 제 12 조의 3 제 4 항: 5 배 이내 - 그 외: 3 배 이내	2011.03.29	2024.02.27 개정을 통해 제 12 조의 3 제 4 항에 대한 적용배수 3 배 → 5 배로 상향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6 조(구입강제), 제 7 조(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제 12 조(보복조치)를 위반한 경우	3 배 이내	2015.12.22	-
제조물 책임법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 • 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힌 경우	3 배 이내	2017.04.18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 9 조제 1 항(허위 • 과장된 정보제공), 제 12 조제 1 항제 1 호(상품 • 용역의 공급 또는 영업지원 등의 부당한 중단 또는 제한), 제 12 조의 5(보복조치)를 위반한 경우	3 배 이내	2017.04.18	-
환경보건법	사업활동 등에서 생긴 환경유해인자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환경성질환을 발생하게 한 경우	3 배 이내	2018.06.12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 40 조(부당한 공동행위), 제 48 조(보복조치) 또는 제 51 조제 1 항제 1 호(부당한 공동행위를 통한 경쟁 제한)를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3 배 이내	2018.09.18	-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대규모유통업자가 제 7 조(상품대금 감액), 제 10 조(상품 반품), 제 12 조(납품업자 등의 종업원 사용), 제 18 조(보복조치)를 위반함으로써 납품업자등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3 배 이내	2018.10.16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 2 조제 1 호차목(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타인의 기술적 또는 영업상의 아이디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의 행위 및 영업비밀 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배 이내	2019.01.08	2024.02.20 개정을 통해 적용 배수 3 배 → 5 배로 상향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위탁기업이 제 25 조제 1 항제 1 호(부당한 물품 수령 거부 또는 대금 차감) • 제 3 호(통상 수준보다 낮은 수준의 대금 결정) • 제 7 호(부당한 발주 수량 감소 또는 발주 중단) • 제 14 호 또는 같은 조 제 2 항(기술 유용 행위)을 위반함으로써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 제 25 조제 1 항제 14 호가목 2 또는 제 25 조 2 항: 5 배 이내 - 그 외: 3 배 이내	2019.01.15	2024.01.19 개정을 통해 제 25 조제 1 항제 14 호가목 2 또는 제 25 조 2 항에 대한 적용배수 3 배 → 5 배로 상향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산업기술침해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배 이내	2019.08.20	2025.01.21 개정을 통해 적용 배수 3 배 → 5 배로 상향
자동차관리법	자동차제작자 등이나 부품제작자 등이 결함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 • 축소 또는 거짓으로 공개하거나 제 31 조제 1 항(제작 결함의 시정)에 따라 지체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여 생명, 신체 및 재산에 중대한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	5 배 이내	2020.02.04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여 중대재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	5 배 이내	2021.01.26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사업주의 차별적 처우 등에 명백한 고의가 인정되거나 차별적 처우가 반복되는 경우	3 배 이내	2021.05.18	-
근로기준법	1. 명백한 고의로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2. 1 년 동안 임금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지 아니한 개월 수가 총 3 개월 이상인 경우 3. 지급하지 아니한 임금 등의 총액이 3 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경우	3 배 이내	2024.10.22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확률형 아이템 표시의무 위반행위가 고의적인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3 배 이내	2025.01.31	-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한국투자증권

■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동 자료의 내용 일부를 기관투자가 또는 제3자에게 사전에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와 배우자는 상기 발행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본 리포트는 고객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작성된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으며,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떤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형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는 당사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가 그 자료 및 정보의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는 없으므로 당사는 본 리포트로써 고객의 투자 결과에 대한 어떠한 보장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종적 투자 결정은 고객의 판단에 기초한 것이며 본 리포트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 본 리포트에 제시된 종목들은 리서치센터에서 수집한 자료 및 정보 또는 계량화된 모델을 기초로 작성된 것이나, 당사의 공식적인 의견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이 리포트에 게재된 내용들은 작성자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